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



주정재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사육장은 주변으로부터의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가축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충분한 활동면적이 확보되어 있을 것
- 나. 충분한 환기 및 채광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 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 라.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을 것
- 마. 혹한·혹서 및 강우로부터 가축을 보호할 수 있을 것
- 바. 축사 바닥은 부드러운 구조일 것
- 사. 축산분뇨의 처리시설이 자원화방법으로 되어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사조건

-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①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 ②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추어 줄 것
 - ③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 2) 가축은 기후조건이 나쁘거나 가축의 건강·안전·복지가 해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주위 식물·토양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정된 조건으로 사육할 수 있다.
- 3)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①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②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요구를 고려할 것
- ③ 자연스럽게 일어서고 앉고 돌 수 있으며, 뺨고 날개짓을 하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 4)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나. 방목조건

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는 부분적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을 것.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운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 ③ 소의 경우는 개체우리를 권장하고, 가축에 대한 바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것
- ④ 번식돈은 임신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한 포유기간의 모돈과 조기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kg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노천구역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 ②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 ③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잔디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횡대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고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할 것
- ④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품종, 지리적 여건 및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부여한 시간의 범위내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에 의하여 연장할 것

다. 자급사료 기반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목장안에 상시 사육두수를 급여할 수 있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가축복지가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목장이외 지역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를 (1)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로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에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

(4)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유기질비료를 투입할 수 있다.

(5)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축의 출처 및 입식

1) 가축의 축종별 품종의 선택과 육종방법은 유기축산의 원칙과 일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①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 ② 가축은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 ③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축을 입식하되,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승인한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 ① 질병이나 재해에 의한 가축의 집단폐사로 축군갱신이 필요한 경우
- ② 품종을 바꾸거나 농장의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 ③ 가축개량을 위하여 종축을 입식하는 경우

3)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에는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을 입식하여야 한다. 다만, 원유생산용 가축의 경우에는 성축을 입식할 수 있다.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

마. 전환기간

1)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의하여 사육하여야 한다(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전환기간 또는 전환조건을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① 반추가축: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고 조방적 사육여건을 구비한 경우

② 비반추가축: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진 경우

2)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전환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가 2년 이상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토지이거나 또는 개간지인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표> 유기축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전환기간

	식 육	입식 후 12개월 또는 생후부터 출하까지 수명의 3/4
한·육우	송아지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식 육	
젖 소	원 유	착유우는 90일
		경산우 또는 미경산우는 6개월
산 양	식 육	생후 6개월
	원 유	착유량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월
돼 지	식 육	생후 6개월
육 계	식 육	일반육계: 부화 후 7주
		삼계탕용 육계: 부화 후 3~4주
산란계	알	병아리 입추 후 5개월
오 리	식 육	부화 후 10주
	알	병아리 입추 후 5개월

바. 번식방법

- 1) 유기축산농가의 여건에 맞추어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 2)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 3) 수정란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사료 및 영양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100%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①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건물(乾物: dry matter)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85% 이상 급여

② 비반추가축의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유기사료를 80% 이상 급여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의 규정에 의한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되고, 단위가축에게는 반드시 거친 조사료를 일정량 급여하여야 한다.

4)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허용된 물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천연물질에 한한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② 우유 및 유제품과 어류 및 어류부산물을 제외한 동물성 사료, 특히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됨

③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④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⑤ 그밖의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아.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①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②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

③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④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품종의 선택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한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만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미량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마취를 실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다.

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자.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축산물의 출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축산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돼지 사육농가는 축사구조를 분과 노를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분뇨는 완숙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3) 소·돼지의 운동장에는 노의 집수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분은 매일 수거처리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축분퇴비 및 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㉟